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155
----------	------

제안연월일 : 2016. 4. 25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6년 2월 5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978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해 3월 29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7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주거약자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인 사회주택 사업자 참여자격을 중소기업까지 확대시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주거약자의 정의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 중 국가 및 서울시, SH공사, L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자, 그 밖에 시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정의함 (안 제2조제2호나목 부터 바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시켜 공급주체의 범위를 확대시킴 (안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 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제2조제2호다목을 같은 조 같은 호 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 중 “그 밖에”를 삭제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2조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등을 말한다.”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 등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u>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다. <u>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가구 등</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u></p> <p>다. <u>「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u></p> <p>라. <u>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u></p> <p>마. <u>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가구 등</u></p> <p>바. <u>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u></p>

현 행	개 정 안
<p>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 등을 말한다.</p>	<p>3.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 등을 말한다.</p>